

의안번호	2115230
의 퇴 인	정점식의원
회 답 일	2022. 05. 09.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□ 후계농어업인 세제지원 등(안 제13조)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에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, 경영정보화, 전문인력의 육성,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III. 미첨부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후계농어업인에게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재정수입의 감소 발생 가능

- 개정안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
 - － 후계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[참고자료] 청년 우대사업 및 상속공제 제도 현황 참조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세목별 과세액 및 이에 적용할 감면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

- 재정수입의 감소 = $\sum_t \sum_i (\text{과세액}_{it} \times \text{감면률}_{it})$

- 이때 t = 추계기간

- i = 세목
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과세액 및 감면률 등을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따라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[참고자료] 청년 우대사업 및 상속공제 제도 현황

—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,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제출자료

□ 청년농촌 정착 지원 주요사업

사업명	지원대상	'22.지원 규모	'22.예산 (백만원)	사업목적 및 내용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 원	만 40세 미 만 (예비)귀 농인	'22. 신규 선발 2천명	38,899	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영농정착지 원금과 창업자금·농지임대·기술교육 등 의 종합 지원을 통해 건실한 영농경영체 로 성장 유도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
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	만 40세 미 만 (예비)귀 농인	'22. 신규 선발 208명	8,000	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위주의 장기 전문 교육을 위한 실습온실 조성 및 교육과정 (20개월)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 인력 양성
청년농촌 보급자리	만 40세 미 만 귀농귀 촌인	1개지구 (지구당 30 호 내외)	800	귀농·귀촌 청년들의 주거·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단독주택형 임대주 택단지 임대
청년귀농 장기교육	만 40세 미 만 (예비)귀 농인	年 150명	1,205	귀농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역량 강화 를 위해 장기간(4~6개월) 체류형 실습교 육 지원

□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

○ 사업내용

- (목적)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,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
- (지원대상) 만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창업(예정)자
- (지원규모) 220명, 1인당 최대 월 1백만원 최장 3년 지원
- (어업경영 기준) 1년차 1백만원/월, 2년차 90만원/월, 3년차 80만원/월
- (사용용도) 어업경영비·가계자금(어업분야 창업,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)
- (지원조건 / 시행주체) 국비 70%(농특), 지방비 30% / 지자체

- 사업체계 : 사업계획 수립 및 인원 배정(해수부) → 지원대상자 선발(시·군) → 보조금 교부(해수부) → 이행점검(시·군) → 성과평가(어촌어항공단)

□ 상속공제제도

적용기간	가업상속공제		상속공제
	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	한도액	한도액
1997년 이전	5년 이상	1억 원	1억 원(영농, 양축, 영어 상속인) 2억 원(임업 상속인)
1997. 1. 1. ~ 1998. 12. 31.			2억 원
1999. 1. 1. ~ 2007. 12. 31.	5년 이상	1억 원	
2008. 1. 1. ~ 2008. 12. 31.	15년 이상	한도 30억 원	
2009. 1. 1. ~ 2011. 12. 31.	10년~15년	60억 원	
	15년~20년	80억 원	
	20년 이상	100억 원	
2012. 1. 1. ~ 2013. 12. 31.	10년~15년	100억 원	5억 원
	15년~20년	150억 원	
	20년 이상	300억 원	
2014. 1. 1. ~ 2015. 12. 31.	10년~15년	200억 원	
	15년~20년	300억 원	
2016. 1. 1. ~ 2017. 12. 16.	20년 이상	500억 원	15억 원
	10년~20년	200억 원	
2017. 12. 17. ~ 2021. 12. 31	20년~30년	300억 원	
	30년 이상	500억 원	
	10년~20년	200억 원	
2022. 1. 1. ~ 이후	20년~30년	300억 원	20억 원
	30년 이상	500억 원	
	10년~20년	200억 원	

국회예산정책처	경제비용추계과
과장	이현경
추계세제분석관	이택균
연락처	02-6788-3746
	69potato@nabo.go.kr
